

전 주 지 방 법 원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2020가소~ ? 손해배상(기)

원 고

전주시

아파트)

소송대리인 변호사

피 고

전주시

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39, H타워 301호 법무사

전종필 사무소(만성동)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 정 사 항

1. 피고는 2021. 4. 까지 원고에게 150만 원을 지급한다.

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

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

하여 지급한다.
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

청구의 표시

청구취지 및 청구원인

별지 소장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음

2021. 3.

판사



※ 이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,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.

소 장

원 고

(-*****)

전주시

ㄷ)

원고 소송대리인

변호사

전주시

(전화:

휴대전화:

팩스:

이메일:

)

피 고

주소

손해배상(기) 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. .부터까지
는 연 %의,부터까지는 연 %의 을 지급하라.
 2. 은 수 있다.
 3. 은 가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